

#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2021-1학기 학사운영 방안(1차)

- 2021.02.01, 교무처 학사운영팀 -

## 1. 관련

- 가. 서울 및 천안 통합 교무위원회 회의(2021.02.01.)
- 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1.3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유지’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다만,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
- 다. 학사운영팀(서울)-2219(2020.11.24.)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수업운영 및 기말고사 등 시행방안 수립’
- 라. 학사운영팀(서울)-2104(2020.11.1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수립’
- 마. 교육부 보도자료(2020.11.01.)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분야 관련 사항’
  -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b>준수</b>	밀집도 1/3 원칙	밀집도 1/3 <b>준수</b>	<b>원격 수업 전환</b>

## 2. 2021-1학기 학사운영 시행 원칙

- 가. 기 결정한 『학사운영팀(서울)-2104(2020.11.1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수립』 단계 중 **‘2단계 학사운영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긴급 변경 가능**함.
- 나. 단, **개강 첫주(3.02~3.08)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사전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되, 학생의 선제적 수업 체험, 수업 선택권 보장 및 강의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교·강사는 2.26(금)까지 수업내용(개요·목표·교재·수업유형·과목유형·성적평가 방법·주차별 수업계획·기타 안내사항 등)을 e-Campus에 사전 탑재하여야 함.
- 다. 수업, 공휴일 일괄보강, 중간·기말·졸업고사, 강의평가, 성적평가,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 등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및 한시적 예외 적용사항은 해당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함.
- 라. 천안캠퍼스 및 대학원의 경우 본 학사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하여 시행 가능함.

### 3.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론 교과목	대면수업 기반 융합수업			전면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준수
실습 교과목 (10인 미만 포함)				원격수업 원칙, 융합수업 허용	
융합수업 시 대면참여 조편성 인원기준	강의실 수용인원 70% 이내 편성 (최소 1m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50% 이내 편성 (최소 1m 이상)	강의실 수용인원 30% 이내 편성 (최소 2m 이상)	10인 미만으로 편성	해당사항 없음
	공통사항: 50명 이상 대면수업 금지, 단, 10인 미만 강좌의 경우 별도의 조편성 없이 대면수업 진행 가능				
고사방법	e-Campus 상호작용(퀴즈/발표/토론 등) 활용 권고, 대면고사 허용(조편성 인원기준/방역지침 준수/ 50명 이상 대면고사 금지)			e-Campus 활용 원칙(10인 미만은 대면고사 허용)	e-Campus 활용 준수
	기말고사 기간 2주간(15~16주차) 확대 시행(교양·교직·일선-15주차/전공-16주차) (단, 모든 보강은 해당 교과목 기말고사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별도의 고사 없이 과제·결과물 등으로 대체 가능)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II 유형으로 확대 적용 (단, 기존 상대평가 예외 과목은 종전 규정 적용)			전체 교과목을 상대평가 예외로 적용	
	대면고사 시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의 성적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비대면 고사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 사전 안내 필요)				
일괄보강주간 운영	공·휴일 일괄(지정) 보강주간(15주차) 시행			일괄(지정) 보강주간 미시행	
비 고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의 경우도 각 단계에 따라 정규학기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주1. 방역조치: 자가진단, 손소독,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수시환기 등

주2. 융합수업: 강의실 수용인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요일별/격주별 등으로 대면수업 참여 및 미참여 학생을 분리하여 팀 편성 \* 미참여 학생에게는 원격수업의 방법(강의녹화시스템/실시간 화상강의/e-Campus 별도 제작 등)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하여야 함(대면수업 참여 팀의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및 불안감 등의 사유로 대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으로 해당 주차/요일의 수업을 대신할 수 있음).

주3. 대면고사 허용의 경우라도, **해외체류 외국인유학생/해외출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코로나19 의심증상자·불안감 등의 경우 비대면 고사 또는 과제·결과물 대체 등으로 시행**하여야 함.